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 개정 안내

'23. 06. 30.(금)

- 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편의성 높이고 재난기간 동안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.
- 3.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가. 개정내용(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6호)

주요내용	주요 개정내용
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	• <신설> 제2조의3(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) 제 2항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36조,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사 태 선포 기간 및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으로 단일화	・ <개정> 제2조의3(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) 제1항 -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
예술활동증명 누적 유효기간 20년 이상 재신청 면제	· <신설> 제2조의3(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) 제 4항 -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(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)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 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- ※ '최근 예술활동증명 완료'이력으로 재난기간만큼 유효기간(최대 3년)이 자동 연장 되며, 기존 신청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재신청 이력*은 소멸됩니다.
 - * 신청이력: 신청완료/접수확인/행정검토중/보완완료/재검토중/행정검토/위원회 검토 단계
 - ※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소멸된 신청 이력은 순차적으로 자동 복구 됩니다.
 - ① 신진/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하여 심의 중인 건
 - ②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무형문화재(보유자. 전승교육사, 이수자) 관련 특례 심의 중인 건
 - 나. 시 행 일: 2023. 6. 30. (금)
 - 다. 문 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-3668-0200

끝.